

2004 주요업무보고



2004. 9.

환 경 과

報 告 順 序

2004 主要業務推進實績 -----3-1

2004 主要業務計劃 -----3-4

2004 주요추진실적

환경친화적 도시조성

영등포구 의제21 시민실천단 운영

- 2004년도 환경교실운영 실적 : 3회 253명 실시
- 안양천 자연학습장 운영 실적 : 지피식물 파종(60여명 참여)

맑은공기 보전

자동차배출가스단속

단 속 대 수			적발 대수	조 치 내 용		
계	측 정 기	비디오카메라		사용정지	개선명령	과태료
47,634대	10,967대	36,667대	2,177대	0	2,177대	375만원

※ 2004년도 상반기 서울시 배출가스 실적 최우수구 선정

매연차량 시민신고제 운영

계	신 고 내 용			조 치 내 용
	엽서	전화	서면	
2,939건	3 건	2,248건	688건	검사안내 2,574, 타시도 이첩290, 기타75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점 검 대 수	기 준 초 과	위반차량조치
7,343건	2,572건	자율점검 안내

※ 문래역 초소(매주 화요일), 아파트(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점 검 업 소	위 반 업 소	조치사항
110개소	5	개선명령 1, 폐쇄명령 및 고발 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점 검 업 소	위 반 업 소	조치사항
320	5	개선명령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추진 실적

구 분	점검대상	수검대수	미검대수	수검률
2004년	22,416	18,502	3,914	82.5%

오존저감 및 경보제 시행

○ VOC발생사업장 관리실적

관리업소수	점검업소	위반업소	조치사항
90개소	34개소	3개소	방지시설의 설치명령

맑은 물 보전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점검업소	위반건수	조치사항
269	11	개선명령 6, 사용정지 4, 폐쇄명령 1

저수조 청소대상 건물 지도·점검

점검완료	위반업소	위반내용	조치내용
74	12	방충망 및 잠금장치 미설치	시정조치

절수기 보급 실적

설치건수	샤워기	양변기
3,950건	1,950건	2,000건

□ 유해화학물질 등 관리대책

구 분	대상업소	단속업소	위반업소	조치내용
유해화학물질 등록업소 점검 (유독물)	223	153	없음	없음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567	567	없음	없음
지정폐기물 폐출사업장 민·관합동 지도·점검	567	85	없음	없음

□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구분	점검건수	위반건수 및 내용	조치내용
소음배출업소	78개소	없음	없음
생활소음원	480개소	5건(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개선이행명령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부 과		징 수		징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총 계	47,798	5,223	36,645	4,401	84.3%	
2004년 1기분	계	47,798	5,223	36,645	4,401	84.3%
	시설물	5,436	2,209	5,024	2,148	
	자동차	42,362	3,014	31,621	2,253	

2004 주요업무계획

【 환경 친화적 도시 조성 】

추진 방향

- 가꿀수록 아름다운 영등포21 추진 활성화
- 시민 환경오염 감시 활성화
- 홍보 및 교육을 통한 환경보전 의식 정착화

가꿀수록 아름다운 영등포21 추진

- 목 적 : 우리구 지방의제로 선정된 「가꿀수록 아름다운 영등포21」 추진을 위해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목표를 설정 구체적 행동방법을 제시하고 22개 행동계획을 토대로 세부추진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계획
 - 환경위원회 개최
 - 회의개최 : 정기회의(년 2회), 수시회의(필요시)
 - 회의내용 : 영등포 의제21 추진실적 평가 등

서울의제21 영등포구 시민실천단 운영

- 구 성 : 환경에 관심을 가진 지역 주민 50명으로 구성
- 추진방향 : 자치구 중심의 지역별 주민 환경감시 체제 구축
- 운영방법
 - 구민의 자율적인 감시활동을 원칙으로 지속적 감시활동 전개
 - 환경기초시설견학 및 교육 실시
 - 민·관 합동 환경오염업소 단속 등

□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워크숍(WORK-SHOP)개최

- 일 시 : 2004년 9.2(목)
- 주 관 : 영등포의제21 시민실천단
- 내 용
 - 영등포구의제21 활동사항 및 향후 실천방향 보고
 - 서울의제21 필요성과 비전 제시, 시민실천단 활동방향 토의

□ 환경교실 운영

- 대 상 :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생 및 학부모
- 주 관 : 영등포구 의제21 시민실천단
- 기 간 : 연중(매월 둘째주 금요일) 6회
- 내 용 : 환경기초시설견학 및 환경보전 이론교육
 - 견학장소 : 영등포정수사업소, 서남하수처리사업소, 문래매연측정소 등
 - 학교 내 이론 강의 : 「가꿀수록 아름다운 영등포21」, 물의 중요성 등

□ 환경보전교육

- 대 상 : 환경관리인 및 배출업소 대표자
- 실시기간 : 년 1회 및 수시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전문강사 초청강연 및 구 환경행정 안내
- 내 용
 - 환경보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관 및 사명감 확립
 -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등

【 맑은공기 보전 】

추진 방향

- 대기배출업소 지도·단속강화
-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강화
- 오존경보제 시행
- 주민 홍보 강화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 대 상 : 148개소
- 점검방법
 - 정기점검 : 종별·등급별 차등점검
 - 수시점검 : 민원 및 환경오염피해 등 점검사유 발생시
 - 특별점검 : 검·경찰 합동단속(무허가 및 상습위반업소 등)
- 점검내용
 - 제조공정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여부

오존(O₃)경보제 실시

- 기 간 : 2004. 5. 1~ 9. 30(일·공휴일 포함)
- 상 황 실 : 환경과(☎2670-3456~3458)
- 운영방법
 - TMS를 통한 상시감시 및 경보체계 구축
 - 경보발령대비 비상근무 실시(기간 중 일·공휴일 포함)
 - 오염도감시 및 상황보고, 경보상황 전파, 일지작성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VOC) 관리 강화

- 시 행 일 : 2004. 4. 1부터
- 대 상 : 자동차 관련시설 중 도장시설 설치 업소 (41개소)

비산먼지 저감

○ 공사장 지도·점검

계	건축공사	굴정공사	토목공사	건물해체공사	조경공사	비고
60	53	-	7	-	-	

- 지도점검 : 분기 1회 이상, 민원발생시
- 점검내역
 - 먼지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운영여부
 -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가동여부
 - 방음, 방진시설 설치 여부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 측정기 및 비디오 단속

- 대 상 : 운행중인 휘발유, 경유, LPG사용 전 차량
- 측정항목 :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매연
- 단속장소 : 문래역 앞, 문래고가, 공군회관 앞 등

○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 기 간 : 연중 (매주 화요일 10:00~12:00, 13:00~17:00)
- 장 소 : 문래역(문래공원 앞 초소)
- 내 용
 - 관내 거주구민 차량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 관내 소재 사업체에서 측정의뢰 시

자동차 배출가스 아파트 순회 무료점검

○ 대 상

- 관내 300세대 이상 31개 아파트단지 및 인근주민차량

○ 점검일시

-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09:30~12:00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

- 기 간 : 연중
- 주요내용
 - 대상장소 : 73개소(차고지 23, 노상주차장 50)
 - 제한내용
 - 대 상 : 모든차량 (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량 등제외)
 - 제한시간 : 경유사용차 5분, 휘발유·가스사용차 3분
 - 과 태 료 : 5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및 독촉

- 기 간 : 연중
- 검사대상

적용연도 차종		2003년12월31일까지	2004년1월1일부터 2005년12월31일까지	2006년1월1일이후
		비사업용	승용	차령12년 경과된 자동차
기타	7년 경과된 자동차		5년 경과된 자동차	3년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승용	3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기타	4년 경과된 자동차	3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 내 용
 - 정밀검사제도 홍보 : 반상회보, 홈페이지, 홍보전단지 등 이용
 - 정밀검사 수검대상 차량 소유자에 대한 검사안내
 - 검사기간경과 차량 소유자에 대한 검사 독촉
 - 검사기간경과 차량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 미수검자에 대한 검사명령 및 고발

【 맑은 물 보전 】

추진 방향

- 폐수발생 사업장 관리 강화 ○ 안양천을 친수공간으로 조성
- 하천 오염방지 및 순찰강화 ○ 안전한 물공급으로 주민건강 보호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 대 상 : 273개소
- 방 법 : 자체 정기점검 및 검·경 합동 등 수시점검
- 점검내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여부
 - 무허가 배출시설설치 조업여부
 - 폐수 무단방류여부

하천 수질오염 방지

- 대 상 : 안양천, 도림천, 여의도 샛강
- 추진계획
 - 하천감시 강화
 - 감시방법 : 시민실천단 합동감시(갈수기 및 우천 시 등)
 - 감시내용 : 미처리폐수 및 지정폐기물 유입여부 기타 환경오염 행위 등
 - 수질오염사고 시 방제체계 확립
 - 신속한 출동체계 및 인근 구청과의 협조체계 구축
 - 방제장비 및 약품 보유(오일웬스, 흡착제, 유 처리제 등)

안전한 물 공급

○ 저수조청소 대상건물 지도·점검

- 점검대상 : 147개소 (20년 이상 ~ 25년 이하 노후 건물)
- 점검내역
 - 저수조 관리상태 (년2회 이상 청소실시 여부)
 - 저수조 주변 유해(오염)물질 방치 여부
 - 저수조 관리자 실제 근무여부 및 위생교육이수 여부 등

○ 저수조 청소업체 지도·점검

- 대 상 : 56개소
- 점검시기 : 하반기(9월~11월) 1회 실시
- 점검내역
 - 시설기준(창고면적 16㎡이상) 준수여부
 - 청소업체 감독원 및 종사자 교육이수 여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합동단속 추진

- 대 상 : 수질, 대기, 소음·진동배출업소, 지정폐기물
- 기 간 : 연 4회(분기1회)
- 단속반 편성 : 4개반 12명(주민 8명)
- 주요단속내용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
 - 폐수 무단방류 여부
 -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여부
 - 기타 제반법규 사항 준수여부 등

【 유해화학물질등 관리대책】

추진방향

- 유독물 등록업소 관리 강화 ○ 토양오염 유발업소 관리 강화
- 지정폐기물 사업장 관리 강화

유독물 등록업소 관리

- 대 상 : 223개소
- 점검방법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 점검내용
 - 유독물 관리 상태 및 관리대장 기록 유지
 - 유독물 등록사항 변경 여부 및 기타 법령 위반사항 등

토양오염 관리

- 대 상 : 88개소(유류 저장시설 20,000ℓ 이상)
 - 주유소:49, 산업시설:15, 기타 난방시설:19, 아파트:5
- 관리방법 : 정기검사 1회 이상
- 검사내용
 - 토양오염방지 조치의 변경여부 및 검사 적정여부
 -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 교체·증설 등 변경여부

지정폐기물 사업장 관리

- 대 상 : 1,321개소
- 점검방법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 점검내역
 - 지정폐기물 처리 계획서 제출여부
 - 지정폐기물 인계서 및 간이인계서의 적정발행 및 보존여부
 - 지정폐기물 보관상태
 - 기타 신고, 보고의무 이행상태 여부

【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

추진 방향

- 소음·진동 배출업소 관리 ○ 생활소음·진동 발생원 관리
-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소음·진동배출업소 관리

- 대 상 : 93개소
- 점검방법
 - 업소별 등급에 따라 점검
 - 기타 민원발생시 수시점검
- 점검내용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 배출시설 변경여부 등

생활소음·진동발생원 관리

- 규제 대상
 - 확성기에 의한 소음(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외)
 -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이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공장, 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이동 소음원(확성기, 음향기기 등)
- 관리 방법
 - 특정공사 사전신고 이행여부
 - 소음 억제시설 설치 및 운영상태
 - 민원발생공사장(사업장) 관리강화
 - 정온시설 주변에 대한 소음도 측정관리 - 연 1회 이상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추진 방향

- 부과자료의 철저한 조사 및 공정한 과세로 환경개선 투자재원 확보
- 부과대상의 탈루방지 및 신규세원 발굴로 징수율 제고

□ 부과대상

- 시설물 : 점포, 사무실 등 바닥면적 160㎡ 이상 시설물
(단, 공장, 창고, 주차장등은 제외, 주택면제)
- 자동차 : 경유사용 자동차

□ 부과·징수기준

- 부과시기 : 매년 3월(부과기간 전년도 07.01~12.31),
9월(부과기간 당해연도 01.01~06.30)

○ 부과기준

- 시설물 : 부과기간 중 용수사용량 및 연료사용량
- 자동차 : 배기량 및 차령 등 소유기간별 부과

※ 시설물분 부과자료 조사

· 조사기간 : 매년 1월, 7월

· 조사방법 :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일시 사역인부 활용하여

시설물 변동사항(신축, 증축, 용도, 사용연료 등) 조사

□ 부과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계		시설물		자동차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9,391	5,214	5,525	2,048	43,866	3,166	
04/2기분	49,391	5,214	5,525	2,048	43,866	3,166	